

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생애최초 구비서류 안내

■ 구비서류[서류제출 기간 : 2022.03.05.(토) ~ 2022.03.11.(금) / 장소 : 당사 견본주택]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동 서류	신분증	본인	•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인감증명서	본인	•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(대리 발급분 불가 /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
	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본인	•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	본인	•주민등록번호(住所地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•기대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을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[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
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세대원	•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※ 발급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
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[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	
추가 서류(해당자)	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배우자	•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	직계존속	•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혼인신고일 확인(상세발급)
		직계비속	•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
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또는 해당자	• [당사 양식] 견본주택에 비치
	부동산소유현황 및 자격확인 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(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인증서 지참) ※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•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를 제출하고,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건축물은 공시가격(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및 해당건축물의 공시지가), 토지는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복무확인서	본인	•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)	
부적격통보를받은 자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자	•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사업주체가 요구하여인정하는 서류	해당자	•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대리인신청 시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(대리 발급분 불가 / 용도 : 서류제출 위임용)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인감도장	청약자	•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위임장	청약자	• [당사 양식] 견본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2.10) 이후 발행분**에 한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**'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를 요청하여 발급**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 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**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**
 ※ 상기 내용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등 관련 법규 및 '국토교통부지침'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법규 및 '국토교통부지침'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및 자산보유기준 안내

■ 소득 증빙 서류

구분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발급처
자격입증서류	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재직증명서(직인 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•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해당직장 •세무서 •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사업자등록증 사본 •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세무서 •건강보험공단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•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해당직장 •건강보험공단
소득세납부입증서류	근로자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해당직장 •세무서
	자영업자	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	

■ 소득 증빙 서류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우선공급기준소득, 50%	130% 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611,741원	10,111,430원	10,611,119원	
일반공급상위소득, 20%	130% 초과~160% 이하	7,839,209원 ~9,648,256원	9,222,468원 ~11,350,728원	9,222,468원 ~11,350,728원	9,611,742원 ~11,829,835원	10,111,431원 ~12,444,837원	10,611,120원 ~13,059,838원	
추첨제, 30%	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	1인 가구	160%이하	~9,648,256원	~11,350,728원	~11,350,728원	~11,829,835원	~12,444,837원	~13,059,838원
	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* (N-8), 100% 기준}

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 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
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
※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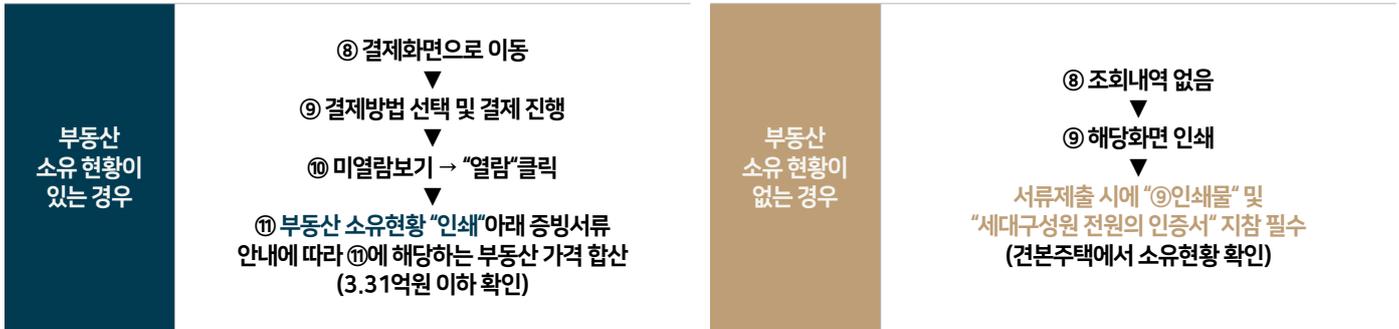
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및 자산보유기준 안내

■ 소득 초과자 자산보유 기준

아래 부동산(건물+토지)의 부동산가액이 3억 3,100만원 이하											
건축물	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건축물 종류	지방세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건축물 종류	지방세징 시가표준액									
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
단독주택	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
주택 외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
주택 외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 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 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,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										

■ 자산보유(부동산 소유)현황 발급 안내

발급대상 : 세대구성원 전원(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인증서 필요)



■ 자산보유(부동산 소유) 시 증빙서류 안내

건축물종류	발급기관	발급방법	
건축물	주택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)	사이트 접속 → 공동주택공시가격 → 주소 입력 → 열람하기 → 출력
		단독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)	1) 사이트 접속 →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→ 주소 입력 → 열람하기 → 출력 2) 사이트 접속 →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→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이동 → 주소 입력 → 검색 → 출력
	주택 외	서울 소재지 서울시 이택스 (https://etax.seoul.go.kr)	사이트 접속 → ETAX이용안내 → 조회/발급 →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→ 주소 입력 → 조회 → 상세보기 → 출력
		그 외 지역 소재지 위택스 (https://www.wetax.go.kr)	사이트 접속 → 지방세정보 → 시가표준액 조회 → 주소 입력 → 검색 → 출력
토지 (비거주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)	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)	사이트 접속 → 개별공시지가(없는 경우 표준공시지가)조회 →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이동 → 주소 입력 → 검색 → 출력 ※ 면적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발급	